

의안번호	2215710
의 퇴 인	이병진 의원
회 답 일	2026. 1. 14.
추 계 번호	25B7357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3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항)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u>2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2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제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0조(벌칙)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제 사유

- 현행법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1)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자

②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현행 형벌에 따른 벌금은 법무부의 수입이 되나, 법무부에 따르면 형벌규정에 따른 벌금 수입을 형벌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률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현행 조항으로 인한 벌금 수입의 현황을 알 수 없으므로,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벌금 수입의 감소 등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stone@assembly.go.kr